대 한 국 제 법 학 회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수신 : 대한국제법학회원님
제목 : 김민서 학회장 취임인사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취임 인사말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서입니다.
2024년 본회 회장으로 선출해주신데 대해 회원 여러분과 전임회장단 그리고 차기회장후보자추천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회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2024년 집행부의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단은 총회에서 선출해주신 박병도 수석부회장님과 함께 총회의 인준을 얻은 양희철 소장님과 이기범 교수님이 한 해 동안 부회장으로 수고해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직무이사로는 총무이사에 오선영 교수님, 연구이사는 오시진 교수님, 출판이사는 박경진 박사님, 국제이사는 이동은 교수님, 학술이사는 김효권 교수님, 기획이사는 장석영 교수님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은 신임 이재현 사무국장이 올 한 해 동안 학회의 살림을 맡아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집행부의 특징은 한마디로 반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임하는 분이 반 그리고 새로 선임된 분이 반인데, 이는 작년에 시작해서 올 해 마무리해야 할 일들의 처리와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학계에는 젊고 유능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모두 모시지 못해 아쉬운 마음입니다. 이 점에 대해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작년은 본회 창설 7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50주년부터 본회에서는 10년 간격으로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로 삼아왔습니다. 2033년에는 80주년 그리고 2053년에는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4년 올해는 '대한국제법학회 창설 100주년을 향한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는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학회 이사진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 본회의 운영은 이런 점을 고려하여 전임 집행부에서 시작된 일을 마무리하고 다음 집행부가 새로운 구상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내년인 2025년은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로 본회의 활발한 활동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올 한 해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2024년은 회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1부의 이행에 관한 협정과 세계무역기구설립협정이 체결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버진 갤럭틱, 블루 오리진, 스페이스 엑스와 같은 민간기업에 의한 민간인의 지구궤도비행이 실현되어 바야흐로 '우주여행의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달조약과 심해저는 모두 '인류의 공동유산'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지금까지도 미국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서명조차 하지 않는 이유는 심해저나 해양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인류의 공동유산 개념을 함께 사용하는 달조약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네오콘을 대표하는 인물의 한 사람이었던 럼즈펠드 전 국방장관은 2012년 워싱턴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우주개발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면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비준을 반대하였습니다.

2020년 미국의 나사(NASA)는 다른 국가의 우주청 등과 아르테미스약정(Artemis accords)을 체결하였습니다. 달조약과 달리 아르테미스약정은 조약이 아니고 법적 구속력도 없습니다. 과연 달조약과 아르테미스약정은 양립 가능할까요? 조약의 목적과 대상을 고려할 때 아르테미스약정은 양립하기 어려운 기존의 달조약을 대체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 견해에 따라서는 기존의 달조약의 관점에서 아르테미스 약정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 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작년에 심해저 자원의 채굴에 대한 규정을 국제해저기구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보셨을 줄 압니다. 일단 올해까지 심해저 자원의 채굴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게 국제해저기구의 계획인데, 특히 규정의 채택 여부에 대해 서구 자본주의 국가의 입장이 양분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목을 끕니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이 개발에 반대하는 입장인 반면에 뉴질랜드를 제외한 영미법계 국가들은 개발에 필요한 규정의 채택을 지지합니다. 물론 미국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당사국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약의 목적과 대상을 고려할 때 심해저 자원의 개발에 있어 협약의 당사국 여부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이는 1993년 60번째 국가가 이 협약을 비준하여 1994년의 발효가 예상되면서 1994년 이행협정의 체결을 통해 심해저를 둘러싼 국가 간의 대립을 해소했던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해저 자원의 개발을 둘러싼 이원적인 규범체제의 출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실질적인 측면을 하나 말씀드리면 일부 국가들이 심해저 자원을 채굴하게 되는 경우 과연 우리가 현실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심해저 자원의 개발을 둘러싼 우리의 선택은 어떠해야 할까요?

세계무역기구설립협정이 채택될 당시만 해도 국가안전의 예외를 규정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1조는 국제사회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제21조는 고무줄

같은 규정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았지만 주목을 끌지는 못했는데, 이는 무역자유화를 향한 당시 국제사회의 뜨거운 열망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정보통신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상황은 급반전하였고 국제사회는 다시 블록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은 “국제법질서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주제 아래 “우주여행의 시대, 달의 미래”, “심해저의 어제와 오늘”, “탈세계화와 세계무역기구의 미래”와 같은 현안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동안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우리 모두에게 값진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1월 9일

김민서 드림